

연구논문

우리나라기업의 상사분쟁관리와  
ADR에 관한 연구\*  
- 무역분쟁과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

최 장 호 \*\*

〈목 차〉

- I. 서론
- II. 무역분쟁의 특성
- III. 무역분쟁의 발생과 무역과의 관계
- IV. 무역분쟁의 해결과 상사중재

\* 이 연구는 2002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경상대학교수

## I. 서론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962년부터 시작된 수출주도형경제개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도의 수출신장과 고도의 경제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도의 수출증가와 더불어 수출진흥의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무역분쟁<sup>1)</sup>(무역클레임)의 발생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무역분쟁은 귀중한 외화의 지급이나 국내무역업자 및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시책의 하나로서 상사중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1966년 중재법을 제정하고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중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하여 국제중재가 이루어진 이후 국제 및 국내중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으며 2002년에는 중재건수는 210건에 달하였다. 또한 국제중재에서 시작된 상사중재는 점차 국내중재증가율이 국제중재증가율을 앞서기 시작하여 근래에는 국제중재 건보다 국내중재 건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분쟁이 증가하고 상사중재가 법제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역분쟁의 발생과 수출의 변화 그리고 무역분쟁의 해결과 상사중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

1) 분쟁이나 클레임의 정의는 다의적이고 분쟁과 클레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설이 분분하다. 분쟁이란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클레임, 트러블 등을 말한다(상사법무연구회, 회사법무부, 1982, p.124. 참조)고 하기도 하고 분쟁을 클레임이라고도 한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절차해설 제10개정판, 1985, p.913. 참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사분쟁이란 용어를 클레임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클레임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무역업계에서는 클레임과 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정확한 한계가 그어지지 않은 채 실무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김원배·김경배, “대중국의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3, p.495.)본 논문에서는 분쟁을 넓은 의미로 보아 클레임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증적인 분석이나 그에 근거한 문제점의 도출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수출증감과 무역분쟁발생의 증감, 상사중재건의 증감과 이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상사분쟁관리 및 상사중재제도의 발전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문제와 인천을 비롯한 부산, 진해, 광양 등지의 경제특구 설치문제 등 21세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여 지속적인 무역증대와 효율적인 무역분쟁관리 및 상사중재와 ADR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경기침체 및 저성장시대에 당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상사분쟁의 예방적 관리와 상사분쟁의 사후관리로서 상사분쟁의 합리적, 효율적인 해결, 처리제도인 ADR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어 그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 및 상사중재통계와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지난 60년대 상사중재가 법제화된 이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출의 증감과 무역분쟁(클레임)발생 추이 그리고 상사중재의 이용추세 등 상사분쟁 및 상사분쟁관리의 변화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II. 무역분쟁의 특성

### 1. 미시적 특성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당해 기업 등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첫째, 상사분쟁이 발생되면 당해 기업 등 당사자는 상거래에서 발생된 분쟁의 해결·처리를 위하여 기업 등 당사자의 인적자원(人的資源)과 물적

자원(物的資源)을 동원하게 되고 이의 낭비를 초래한다. 즉 기업 등의 상사분쟁이 발생되면 그 분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그 업무관련 동료나 상사들은 당면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 업무에 매달리게 되며 또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입수, 필요자료의 작성, 준비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

둘째, 상사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회수가 불가능하여 지는 등 기업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 국내를 막론하고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결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적지 않다.

셋째, 기업 등 거래 당사자의 상사분쟁(클레임)은 기업 등 거래당사자의 대외신용이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 기업의 상사분쟁은 기업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상사분쟁(클레임)이 발생되면 그로 인하여 거래의 단절이나 거래선의 상실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장기간 거래하여온 고객이라 할지라도 상사분쟁의 발생으로 인하여 신뢰가 없어지며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이나 기업상품 등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의 대외신용도 하락과 상품의 이미지실추로 상품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여섯째, 상사분쟁의 발생은 기업인 등 거래당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사업의욕을 감퇴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상사분쟁의 발생은 기업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신경을 쓰게 하여 업무의욕을 감퇴시키고 사무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일곱째, 상사분쟁은 기업의 도산 및 관련업체의 연쇄도산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어느 기업의 도산은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협력기업에게도 영향을 주어 동반 도산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 2. 거시적 특성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및 국제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의 기업은 사회의 핵심적 조직체로서 국민경제의 중추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거래상대방, 소비자, 근로자, 주주, 경쟁기업, 채권자, 채무자, 국가 및 공공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게 된다. 특히 국제거래를 하는 무역기업 또는 국제기업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국제관계로 이들 기업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당해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그리고 국가간 경제협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국가와 국민경제에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첫째,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거시적으로 대외지급이나 수출대금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국가의 국제수지(國際收支)를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클레임 내지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 등 외화의 대외지급채무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외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기업 등 상거래당사자간에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상사분쟁은 국내 무역업계의 대외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공신력이나 국가신인도 내지 국가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상사분쟁은 국가의 공신력이나 국가신인도 내지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여 당해 국가의 수출 또는 무역증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업 등 개별 상거래당사자의 클레임이나 상사분쟁은 나아가 국가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국가간의 무역전쟁이나 정치분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 Ⅲ. 무역분쟁의 발생과 무역과의 관계

우리나라 무역분쟁의 발생은 그 발생건수나 발생금액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고 우리나라 무역거래건수와 무역액과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분쟁발생의 변화를 무역의 변화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무역분쟁현황을 전수자료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 간 발생한 모든 무역분쟁을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무역분쟁발생사실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설상사분쟁해결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집계하고 통계처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무역분쟁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1960년대 후반(1966-1969년) 연평균 412,120,000달러를 수출하여 연평균 35.6%의 높은 수출신장세를 보였으며 또한 연평균 1,249,806,000달러를 수입하여 연평균수입증가율은 36.9%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기간 중 연평균클레임액은 505,500달러에 달하여 연평균클레임증가율은 219.2%라는 경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70년대(1970-1979년)에도 연평균수출증가율은 46.4%, 연평균수입증가율은 28.9%에 달하였으나 동기간 중 클레임증가율은 연평균 241.9%에 이르러 연평균수입증가율의 8배, 연평균수출증가율의 5배에 달하였다. 1980년대(1980-1989년)에도 연평균수출증가율은 15.8%, 연평균수입증가율은 12.2%에 이르렀으나 동기간 중 클레임증가율은 45.9%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통계작성방법의 변동으로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동일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1990년대 후반기(1995-1999년) 연평균수출증가율은 9.0%, 수입증가율은 6.5%에 불과하였으나 동기간 중 클레임증가율은 26.7%에 이르렀다. 이로서 1990년대 후반기 연평균클레임증가율은 연평균수출증가율의 3배, 연평균 수입증가율의 4배에 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196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클레임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표1 및 2〉 참조).

우리나라의 클레임액(대한상사중재원 접수건)은 1966년 92,00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1,146,000달러, 1980년에는 89,484,000달러 그리고 1990년에는 8,440,255,000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1960년대 후반(1966-1969)의 연평균 클레임액은 507,00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22,356,000달러에 이르러 60년대 평균클레임액의 44배에 달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150,841,000달러에 이르러 1970년대 연평균클레임액의 6.7배에 달하였으며 2000년대초(2000-2002)에 이르러서는 연평균클레임액은 309,065,000달러에 달하였다(〈표1〉 및 〈표2〉 참조).

또한 클레임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60년대에는 0.1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0.23%로 증가되었고 1980년대에는 0.45%로 증가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는 클레임집계방식이 변동되어 종전의 집계방식에서 보다 좁은 범위로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클레임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표1 및 2〉 참조).

클레임건당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1966-1969)에는 4,60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27,200달러, 1980년대에는 73,900달러에 달하여 무역분쟁건당 무역분쟁금액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집계방식이 변경된 이후인 1990년대 후반에도 클레임건당금액은 303,000달러에 달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는 470,700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아 196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무역분쟁(클레임)발생율은 연평균수입액증가율보다 높고 또한 연평균수출액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우리나라의 클레임건당금액 또한 1960년대 이후 계속(1990년대는 집계방식의 변경을 감안) 증가되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1〉 연도별 클레임발생현황

단위 : US \$1,000, %

구분 연도	클레임				수출		수입		클레임 건당 금액		클레임액 대 수출액 (B/C, %)
	건수 (A)	증가율 (%)	금액(B)	증가율 (%)	금액(C)	증가율 (%)	금액	증가율 (%)	B/A	C/A	
1966	37	-	92	-	250,334	-	716,441	-	2.5	6,765.8	0.04
1967	97	262.2	348	378.3	320,229	27.9	996,246	39.1	3.6	3,301.3	0.11
1968	103	6.2	455	30.7	455,401	42.2	1,462,875	46.8	4.4	4,421.4	0.10
1969	147	42.7	1,131	248.6	622,516	36.7	1,823,611	24.7	7.7	4,234.8	0.18
1970	133	-9.5	1,146	1.3	835,185	34.2	1,983,973	8.8	8.6	6,279.6	0.14
1971	264	98.5	2,028	77.0	1,067,607	27.8	2,394,320	20.7	7.7	4,044.0	0.20
1972	229	-13.3	1,157	-42.9	1,624,008	52.1	2,522,022	5.3	5.1	7,091.7	0.07
1973	289	26.2	1,760	52.1	3,225,025	98.6	4,240,277	68.1	6.1	11,159.3	0.05
1974	608	210.4	2,197	24.8	4,460,370	38.3	6,851,848	61.6	3.6	7,336.1	0.05
1975	621	2.1	6,874	321.9	5,081,016	13.9	7,724,434	6.2	11.1	8,182.0	0.14
1976	701	12.9	4,984	27.5	7,715,343	51.8	8,773,619	20.6	7.1	11,006.2	0.06
1977	801	14.3	7,187	44.2	10,046,457	30.2	10,810,539	23.2	9.0	12,542.4	0.07
1978	850	6.1	138,611	1,928.6	12,710,642	26.5	14,971,929	38.5	163.1	14,953.7	1.09
1979	1,145	34.7	57,615	-58.4	15,055,453	18.4	20,338,612	35.8	50.3	13,148.9	0.38
1980	2,196	91.8	89,484	55.3	17,504,864	16.3	22,291,663	9.6	40.7	7,971.2	0.51
1981	2,267	3.2	142,284	59.0	21,253,757	21.4	26,131,421	17.2	62.8	9,375.2	0.67
1982	1,994	-12.0	211,201	48.4	21,853,300	2.8	24,250,800	-7.2	105.9	10,959.5	0.97
1983	1,654	-17.1	71,726	-66.0	24,445,054	11.9	26,192,222	8.0	43.4	14,779.4	0.29
1984	1,870	1.1	49,485	-31.0	29,244,861	19.6	30,631,441	16.9	26.5	15,639.0	0.17
1985	1,852	-1.0	83,436	68.6	30,283,122	3.6	31,135,656	1.6	45.1	13,477.3	0.28
1986	2,247	21.3	122,517	46.8	34,714,470	14.6	31,583,900	1.4	54.5	15,265.8	0.35
1987	2,453	9.2	184,958	51.0	47,280,927	36.2	41,019,812	29.9	75.4	19,274.7	0.39
1988	1,910	22.1	163,234	-11.8	60,696,388	28.4	51,810,632	26.3	85.4	31,778.2	0.27
1989	1,965	2.9	390,085	239.0	62,377,174	2.8	61,464,772	18.6	198.5	31,744.1	0.63
1990	2,195	11.7	8,440,255	2163.7	65,015,731	4.2	69,843,678	13.6	3845.2	29,619.9	13.0

- 주 : 1. 1966-69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위원회 통계자료  
 2. 1970-84 : 대한상사중재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통계자료  
 (중재, 조정, 알선, 상담, 조희 포함)  
 3. 1979년까지 외국환지급추천은 알선 속에 포함됨.  
 4. 1980년 이후 클레임으로 인한 외국환지급추천은 별도 분류하여 클레임통계에 포함

자료: 필자작성  
 (1. 상공부, 통상년보, 1973, 2.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5, 3. 대한상사중재협회, 사업보고서, 1975, 4. 장대영, 국제거래의 상사중재와 협상, 전경련 국제경영원, 1983, 5.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1986. 9, p.90. 6.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현황(1985) 등 통계 이용)



〈표 2〉 연도별클레임발생현황 단위 : US \$1,000, %

구분 연도	클레임				수출		수입		클레임 건당 금액		클레임액 대 수출액 (B/C %)
	건수 (A)	증가 율 (%)	금액(B)	증가 율 (%)	금액(C)	증가 율 (%)	금액	증가 율 (%)	B/A	C/A	
1991	3,250	48.1	2,882,911	-65.8	71,870,122	10.5	81524858	16.7	88.6	22,113.9	4.0
1992	3,238	-0.4	388,222	-86.5	76,631,515	6.6	81775257	0.3	119.8	23,666.3	0.51
1993	3,194	-1.4	405,504	104.5	82,235,866	7.3	83800142	2.5	126.9	25,747.0	0.49
1994	2,918	-8.6	451,112	111.3	96,013,237	16.8	120348175	22.1	154.6	32,934.6	0.47
1995	707	-	124,464	-	125,057,988	30.3	135118933	32.0	176.0	177,814.9	0.10
1996	694	-1.8	124,804	0.3	129,715,137	3.7	150339100	11.3	179.8	186,909.4	0.10
1997	697	0.4	199,880	60.2	136,164,204	5.0	144616374	-3.8	286.8	195,357.5	0.15
1998	712	21.0	202,642	1.4	132,313,143	-2.8	93281754	-35.5	284.6	185,833.1	0.15
1999	499	-29.9	293,321	44.8	143,685,459	8.6	119752282	28.4	587.8	287,946.8	0.20
2000	649	30.0	376,027	28.0	172,267,510	19.9	160481018	34.0	579.4	265,435.3	0.22
2001	643	-0.9	264,900	-29.6	150,439,144	-12.7	141097821	-12.1	411.9	233,964.4	0.18
2002	680	5.8	286,267	8.7	162,470,528	8.0	152126153	7.8	420.9	238,927.2	0.18
1966-1969 평균	96	103.7	507	219.2	412,120	35.6	1,249,806	36.9	4.6	4,680.8	0.11
1970-1979 평균	564	38.2	22,356	241.9	6,128,119	46.4	8,016,155	28.9	27.2	95,744.3	0.23
1980-1989 평균	2,041	12.2	150,841	45.9	34,965,392	15.8	34,651,231	12.2	73.9	17,131.5	0.45
1990-1999 평균					145,046,887	9.0	108,040,055	8.8			1.90
1990-1994 평균	2,959	9.9	2,513,600	445.4	121,056,368	9.1	83,858,422	11.0	849.5	40,911.2	3.71
1995-1999 평균	662	-2.6	189,022	26.7	133,387,186	9.0	128,621,689	6.5	303.0	206,772.3	0.14
2000-2002 평균	657	11.6	309,065	2.4	485,177,182	5.1	453,704,992	9.9	470.7	246,190.0	0.19

주: 1. 클레임통계에 중계, 조정, 알선, 상담, 외국환지급추천포함.  
 2. 1995년 이후부터 통계집계방식변경(중계 및 알선 건만 집계)

자료: 저지작성(클레임통계는 대한상사증재원, 상사증재 30년사, 1996년, <http://www.kcab.or.kr/etc>, 수출입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수출입총발표 이용)

〈표 3〉 연평균무역분쟁(클레임)발생율과 연평균무역액증가율과의 관계

단위: %

구 분	내 용
1960년대	수출증가율(35.6) < 클레임증가율(219.2) 수입증가율(36.9) < 클레임증가율(219.2)
1970년대	수출증가율(46.4) < 클레임증가율(241.9) 수입증가율(28.9) < 클레임증가율(241.9)
1980년대	수출증가율(15.8) < 클레임증가율(45.9) 수입증가율(12.2) < 클레임증가율(45.9)
1990년대(후반)	수출증가율(9.0) < 클레임증가율(26.7) 수입증가율(6.5) < 클레임증가율(26.7)

자료: 필자작성

한편 상사분쟁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표4〉 및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경우는 전체의 20%미만(금액기준으로는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금결제문제가 4.50%로 비중이 제일 높고 다음 계약내용변경 및 파기문제나 계약조건해석 등의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상사분쟁(중재+알선)건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1998년과 1999년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상사분쟁발생건수는 전체의 13.1%와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각각 8%와 1.4%에 불과하였다. 2000년 및 2001년 그리고 2002년의 품질불량 건수는 전체 상사분쟁건수의 17.7%, 16.8%, 16.9%를 차지하여 전체상사분쟁발생건수의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볼 때에는 더욱 낮아져 각각 1.0%, 2.4%, 10.3%로 대체로 전체상사분쟁발생건수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금결제와 관련된 상사분쟁은 발생건수기준으로 1998년과 1999년, 각각 전체의 47.2%, 37.1%를 차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27.6%와 68%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0년과 2001년 및 2002년에는 건수기준으로는 각각 41.9%, 43.1%, 39%를 차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40.8%, 75.6%, 64.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제일 높았다(〈표4〉 및 〈표5〉 참조).

계약조건의 해석(계약내용변경 및 파기)문제로 인한 상사분쟁은 발생건 수기준으로 2000년 17.0%, 2001년 18%, 2002년 17%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2000년 32.2%, 2001년 13.2%, 2002년 16.6%를 차지하였다.

〈표 4〉 상사분쟁발생원인(1)

단위:원

연도 건수·금액	1999				1998				대 비 증 감 율(%)	
	구분	건수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건수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건수
품질불량	90	18.0	4,389,960	1.43	93	13.1	16,217,063	8.00	△3	△73
수량부족	13	2.6	370,000	0.12	11	1.5	347,808	0.17	18	6
포장불량	1	0.2	17,040	0.01	0	0.0	0	0.00		
선적(납기)	90	18.0	6,791,070	2.21	59	8.3	2,322,130	1.15	36	192
대금결제	185	37.1	209,072,074	68.05	336	47.2	55,985,323	27.63	△45	273
운송	23	4.6	4,194,563	1.37	35	4.9	7,143,264	3.53	△34	△41
수수료 미지급	14	2.8	60,546	0.12	29	4.1	879,225	0.43	△52	△59
계약내용 변경 및 파기	69	13.8	77,577,501	25.25	109	15.3	111,415,062	54.98	△37	△30
지적재산권 침해 등	2	0.4	1,372,167	0.45	4	0.6	2,611,650	1.29	△50	△47
원인미상	6	1.2	179,995	0.06	4	0.6	800	0.00	50	22,399
기타	16	3.2	2,910,875	0.95	32	4.5	5,719,797	2.82	△50	△49
총계	499	100	307,235,791	100	712	100	202,642,122	100	△30	52

자료: 필자작성([http://www.kcab.or.kr/etc/DK\\_claim1998.htm](http://www.kcab.or.kr/etc/DK_claim1998.htm) 03-12-04  
분야별클레임접수현황표 이용)

〈표 6〉 상사분쟁발생원인(2)

단위: 1,000.달러, %

연도	2000				2001				2002			
	건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건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건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품질불량	115	17.7	3,763.7	1.0	108	16.8	6,216.2	2.4	115	16.9	29,487.6	10.3
수량부족	7	1.1	309.5	0.1	7	1.1	123.3	0.1	5	0.7	49.1	0
포장불량	2	0.3	16.0	0	2	0.3	2.3	0	0	0	0	0
선적 및 납기 불이행	86	13.3	82,771.7	22.0	51	7.9	8,286.6	3.1	76	11.2	20,546.2	7.2
대금결제	272	41.9	153,603.2	40.8	277	43.1	200,160.5	75.6	265	39.0	183,822.1	64.2
운송	25	3.9	590.7	0.2	35	5.4	2,234.2	0.8	30	4.4	195.7	0.1
계약조건해석	110	17.1	121,093.0	32.2	116	18.0	35,134.0	13.2	116	17.1	47,460.7	16.6
지적재산권	4	0.8	979.8	0.3	1	0.2	56.8	0	5	0.7	551.5	0.2
원인미상 및 기타	28	4.3	12,953.0	3.4	46	7.2	12,686.7	4.8	68	10.0	4,168.0	1.5
총 계	649	100	376,080.5	100	643	100	264,900.5	100	680	100	286,280.9	100

자료: 필자작성(대한상사중재원, 원인별접수현황 수정, 보완)

또한 선적과 운송문제도 계약내용변경 및 파기문제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1999년의 선적 및 납기불이행으로 인한 상사분쟁은 발생건수기준으로 각각 전체 상사분쟁발생건수의 8.3%, 1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1.2%, 2.2%를 차지하였다.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에는 각각 13.3%, 7.9%, 11.2%를 차지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40.8%, 3.1%, 7.25%를 차지하였다(〈표3〉 및 〈표4〉 참조).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상사분쟁의 발생원인은 대체로 상품의 품질문제보다는 업무의 질의 문제가 비중이 높고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 IV. 무역분쟁의 해결과 상사중재

### 1. 무역분쟁의 해결과 상사중재의 효용

무역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송 외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DR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중재인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in London)로비에는 14, 15세기의 중재판정이 있다.<sup>2)</sup> 아시아도 오늘날 ADR로 알려진 제도와 밀접한 문화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조정은 오랫동안 소송보다 중요한 법률문화의 일부가 되어왔다.<sup>3)</sup>

무역분쟁 등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강력한 ADR로서는 중재제도가 널리 선호되고 있다. 중재서비스를 위하여 다수의 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미국법원에 있어서도 최소한 그 2/3는 ADR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sup>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과 비교하여 신속성과 경제성, 판정의 융통성, 판정자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내용의 비밀보장성을 장점으로 한다<sup>5)</sup>. 그러나 그 외에도 중재판정의 국내·국제적인 효력 등 많은 장점과 특성으로 상사중재의 효용은 광범위하다.

첫째, 중재제도란 본질상 재판이나 법의 지배와 같이 흑백을 명확히 하는 *suum cuique tribuere*(각자에게 그의 것을 줌)가 아니고 양당사자에게 호양(互讓)을 전제로 하여 우선 붕괴되어 가는 상호관계를 회복시켜 장래에 공존할 수 있는 노선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sup>6)</sup> 이 때문에 중재는 계

2) Colin Rule,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Business*, Jossey-Bass, 2002, pp.13-14.

3) Geoffrey M. Beresford Hartwell, *The Commercial Way to Jus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pp. 213-214.

4) *Ibid.*, pp.215-216.

5) Alan I. Widiss, 「Arbitration」, Practicing Law Institute, 1979, pp.14-15.

속적·반복적, 대량적·정형적 성격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송의 경우와 같은 관할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국제무역거래나 국제마케팅에서 생긴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더욱 상사중재가 이상적이다.

둘째, 상사중재제도는 계약당사자에게 장기 계약의 주요 요소를 결정·보완토록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될 때 당사자들은 거래정황의 변화에 상응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중재인이 그러한 계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후 그들의 공동생산제품의 시장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품판매의 로열티(royalty)는 중재인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결정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즉 상사중재는 장기사업계약의 분쟁을 어떤 당사자도 회망하지 않는 기본거래에 대한 파기나 연기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기업과의 계약분쟁의 경우,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책의 문제로 사법재판은 재판관할에 의해 방해될 수 있으나 상사중재의 이용은 주권면책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난점을 제거시킨다.

넷째, 국제상거래분쟁사건으로 사법절차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 없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권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도 상사중재인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사중재는 공산권과의 무역불안을 해소시키고 이들 지역과의 무역을 촉진시킨다.

세계 일차 대전 후 소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상사계약이나 상호간의 계약에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오로지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여 동서(東西)상사거래와 산업협력의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중재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발행된 중재법원의 이용에 대한 통계숫자는 공산주의 국가 분쟁당사자들에 의한 ICC 중재절차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

6) 喜多川篤典, 國際商事仲裁의 研究, 1978. p. 273.

음을 보여준다. 공산주의국가와 시장경제국가 사이에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과 관련된 쌍무협정(雙務協定)이나 조약은 거의 없지만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자유세계국가들이 대부분 비준한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등과 같은 국제중재협약을 비준하여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 보장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중재제도는 일반적으로 전 사회 및 전 산업 분야에서 채택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건설, 컴퓨터, 가사(이혼사건 등), 고용(비단체교섭), 주택하자담보(Homeowners' Warranty: HOW), 국제상사, 불량자동차소비자권리보호법(Lemon Law<sup>7)</sup>), 연금, 동업자(Partnerships), 특허와 라이선싱(Licensing), 부동산, 증권, 섬유 등의 분야 분쟁에서 유용하다.

7) 소비자운동의 출현은 소비자지향의 입법을 유발시켰으며 그 중 매우 의미 있는 입법은 여러 주(州)의 레몬 법(Lemon Law)이다. 이들 입법 중 첫째는 1983년 뉴욕에서 통과된 법률로 자동차제조회사에게 소비자와 자동차제조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공식적분쟁해결기구를 창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레몬 법과 같은 형태의 입법을 하고 있다.(JOHN H. WILKINSON, DONOVAN LEISURE NEWTON & IRVINE ADR PRACTICE BOOK, WILEY LAW PUBLICATIONS, 1990, P.39.)

레몬법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소비자들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 후에 계약상의 보증기간 내에 적용되는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을 경우,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가격을 돌려 받거나 새 차로 바꿀 수 있고 또는 리스의 경우 그 동안 지불한 리스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송-베버리 컨슈머 워런티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이라고도 하며 자동차사용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 엔진의 결함 등 심각한 자동차의 고장으로 2회 이상 수리해도 고장이 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레몬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거나 리스한 차가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 새차의 교환이나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 2. 연도별 상사중재현황분석

우리나라의 상사중재는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국제중재로부터 상사중재가 시작되어 점차 그 이용과 중재건수가 증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상사중재는 1970년대(1971-1979년)에는 수 건에서 3, 40건(최고 1978년 38건)에 불과하였으나 상사중재의 연평균증가율은 동기간 37.6%에 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사중재의 연평균증가율은 14.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0년대 평균중재건은 14.6건인데 비하여 1980년대는 57건으로 70년대 연평균 중재건의 4배에 달하였다. 이를 국제중재건과 국내중재건으로 비교하여보면 국제중재건의 연평균증가율은 9.1%에 불과한데 비하여 국내중재연평균증가율은 무려 99.4%에 달하여 이 기간중 국내상사중재건수가 국제상사중재건수보다 10배나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우리나라 상사중재연평균증가율은 25.4%에 달하여 1980년대 14.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국제중재의 연평균증가율은 6.6%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내중재는 19.9%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이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즉 1982년 이후 1988년도와 1990년도를 제외하고는 국제중재보다는 국내중재건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평균상사중재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최저수준인 12%로 나타났으며 국제상사중재건의 연평균증가율은 11.6%, 국내상사중재 연평균증가율은 14.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통계분석은 3개 년도에 불과해 2000년대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사중재건수면에서 보면 2002년 상사중재건은 총 210건에 달하여 상사중재가 법제화되고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중재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175건, 2001년 197건, 2002년 210건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국제중재와 국내중재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보면 국제중재건은 2000년 40건, 2001년 65건, 2002년 47건인데 비하



여 국내중재는 2000년 135건, 2001년 132건, 2002년 168건으로 나타나 매년 국내중재가 국제중재건의 2배 내지 3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6〉 참조). 그러나 19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연평균 상사중재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각 37.6%, 14.3%, 25.4%, 12.0%로서 1970년대가 제일 높고 2000년대 초(2000-2002)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중재건의 경우,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각 9.1%, 6.6%, 11.6%로서 1990년대 국제상사중재 연평균증가율이 제일 낮았고 2000년대 초의 증가율이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중재건의 경우는 1980년대 연평균증가율은 47.8%, 1990년대 연평균증가율은 19.9%, 2000년대 초 연평균증가율은 14.6%로 나타나 국내상사중재의 연평균증가율은 계속 낮아져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연도별상사중재 현황

(단위: 건)

연도 건수	국 제	증감율(%)	국 내	증감율(%)	합계	증감율(%)
1970					4	
1971					2	-50
1972					4	100
1973					5	25
1974					13	160
1975					11	-15.4
1976					17	54.6
1977					32	88.2
1978					38	18.8
1979					20	-47.4
1980	14		12		26	30.0
1981	27	92.9	7	41.6	34	30.8
1982	27	0	31	342.9	58	70.6
1983	29	7.4	37	19.4	66	13.8
1984	27	-6.9	43	16.2	70	6.0
1985	29	7.4	41	4.6	70	0.0
1986	28	-3.4	29	-29.3	57	-18.6
1987	22	-21.4	57	96.6	79	38.6

1988	28	27.3	26	-44.4	54	-31.6
1989	22	-21.4	34	30.8	56	3.7
1990	19	-13.6	17	-50.0	36	35.7
1991	17	-10.5	34	100.0	51	41.7
1992	30	76.5	41	20.6	71	39.2
1993	28	-6.7	40	-2.4	68	-4.2
1994	33	17.9	39	-2.5	72	5.9
1995	18	-45.4	61	56.4	79	9.7
1996	36	-41.7	73	19.7	109	38.0
1997	51	41.7	82	12.3	133	22.0
1998	59	15.7	133	62.2	192	44.4
1999	40	32.2	110	-17.3	150	21.9
2000	40	0.0	135	22.7	175	16.7
2001	65	62.5	132	-2.2	197	12.6
2002	47	-27.7	163	23.4	210	6.6
1970-1979평균					14.6	37.6
1980-1989평균	25.3	9.1	31.7	47.8	57	14.3
1990-1999평균	33.1	6.6	63	19.9	96.1	25.4
2000-2002평균	50.7	11.6	43	14.6	194	12.0

자료: 필자작성(대  
한상사증재원 통계 이용)

## V.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장 우리나라무역분쟁의 발생과 수출입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출제일주의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출증가율보다는 무역분쟁발생증가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수입증가율과 연평균무역분쟁발생율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무역은 동 기간 중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무역분쟁의 발생은 그보다도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어 상사분쟁관리에 큰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분쟁금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무역분쟁건당금액도 점점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품의 품질문제보다도 업무담당자나 기업임직원 등 업무수행자의 업무의 질(質)에 문제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일종인 상사중재의 이용도를 보면 1970년대에는 연평균 14.6건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57건, 1990년대에는 96.1건으로 계속 증가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비교하면 국내중재는 1980년대 연평균 31.7건으로 47.8%란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제중재는 25.3건으로 9.1%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도 국내중재건은 연평균 63건에 19.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국제중재건은 33.1건에 6.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보아 국제중재의 이용율은 국내중재의 그것보다 훨씬 낮으며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의 재판제도란 18, 19세기 근대적 국가, 국가법이 형성되면서 확립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중재가 분쟁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이 시기에도 상사분쟁은 대부분 상사중재로 해결되었다.

이상으로 보아 우리나라 상사분쟁관리와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선방향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사분쟁의 발생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하여도)또한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과 상사분쟁발생증가율을 비교하여보면 상사분쟁발생증가율이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사분쟁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클레임 내지 상사분쟁관리가 철저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클레임(무역분쟁)원인분석에 의하면 이는 상품의 품질문제라기 보다는 업무(業務)의 질(質)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 관리자, 실무자 등 기업관계자들의 상사분쟁관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상사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인관계자들에게 상사분쟁관리의식수준을 높이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상사분쟁은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외화의 낭비 등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사분쟁의 발생율은 수출증가율보다도 높으며 무역분쟁금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상사분쟁의 특성과 우리나라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무역분쟁관리에 대한 당위성 존재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기업차원에서만 해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상사분쟁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또한 상사중재 등 다양한 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와 다기화되어 있는 ADR 담당기관 상호간의 조정과 협조와 및 ADR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건을 분석하여보면 국제중재건수가 1966년 상사중재제도시행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내중재건수를 앞질렀으나 1990년대를 기준으로 국내중재건수가 국제중재건수를 능가하고 있다. 또한 중재사건의 증가추세도 국내중재가 국제중재를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국제중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제상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무역인들과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중재제도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소망스럽다. 또한 가일층 국제중재협력이나 국제중재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의 보급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상사분쟁의 발생은 당해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도 외화자산의 낭비 등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기업 상사분쟁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기업측면에서는 물론 국가측면에서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상사분쟁의 미시적, 거시적 영향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분쟁발생현황을 고려하며 무역질서 등 상거

래질서의 확립과 기업관계자의 업무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상사분쟁관리사제도(Certified Dispute Manager: CDM)의 시행이 바람직하다. 즉 상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무역업무 및 상사분쟁관리업무 등 전문업무능력을 인증(認證) 할 수 제도를 시행하여 무역 등 상거래관련분야 기업인들과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전문가자격제도의 신설이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 국내거래실무자들로 하여금 무역계약을 비롯하여 국제무역법규, 국내무역법규, WTO, WIPO 등 국제기구, 수출입통관, 해상, 보험, 물류, 상거래법규(상법 등), 대금결제(신용장), 상사중재를 포함한 ADR 등 상사분쟁의 사전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업무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업무의 질적(質的) 문제로 상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 처리하여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연수교육, 강좌, 교육원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상사분쟁관리사제도는 국내유일의 상설상사중재기관이며 국내상사분쟁관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응시자격(사회인, 대학생 등),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 자격증제도를 관리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제휴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주최하는 재경관리사제도, 한국무역연수원의 국제무역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재경관리사제도 등은 민간자격제도이나 상사분쟁관리사(CDM)제도는 국가공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다섯째, 상사분쟁은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 모두에서 발생하며 상사분쟁의 관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기업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세사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무역 및 상거래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상사분쟁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공무원(5급재경직, 7급 등 재경분야) 등의 각종 관련 자격시험과목에 상사중재 내지 상사분쟁관리과목을 포함시킴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시험(국제통상직 5급이나 관세사 시험)의

무역실무과목에 상사중재나 무역계약 등의 내용이 시험문제에 포함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약하고 이것으로는 상사분쟁관리와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문지식수준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수과목이 어려운 경우 선택과목이라도 독립과목으로 시험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 내지 경제특구지정에 부응하여 경제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특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의 활성화 등 중재제도측면에서의 대책이 요망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규를 정비하고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의 허브로 발전,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 등의 지역내에서의 국제상거래활동과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로서의 국제경쟁력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들 지역 내에서의 국제거래분쟁의 발생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및 처리가 중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한 효율적인 상사분쟁관리대책이 요망된다. 우선 정부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소망스럽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기본적인 대책의 하나로서 자질 있는 외국중재인을 확충하고 지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and the ADR in the Republic of Korea**

-Stressed on the Trade Dispute and Commercial Arbitration-

**Jang Ho Choi**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or the enterprise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 ADR needs to be activated to settle the trade dispute for the mor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rade dispute has increased for more than thirty years from 1960s and the problem of the occurrence of trade dispute has been very seriou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general,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trade dispute has been higher gradually to present and has been high more than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export from the 1960s. Also the annual average increase rate of trade dispute in R.O.K. in general high than the Japan and the Taiwan. Accordingly, the trade dispute has been the factor of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occurrence of commercial dispute is apt to affect the enterprise and the national economy. It can be called as micro and macro effect. Also, it's analysed that all these problems occurred because of business quality of businessman than the quality problem of goods.

Several improvements directions recommended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es above.

The first, it's required that the consciousness level of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of businessman should be higher to prevent occurrence of commercial dispute and settle the dispute efficiently.

The second, the government concerned had better fix policy to raise the standard of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since the trade dispute affects the enterprise and the national economy. And ADR institutions such as the KCAB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activation of ADR such as conciliation.

The third, it's desirable that the KCAB should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ctivate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ivity with other countries.

The fourth, it's desirable that the system of Certified Dispute Manager(CDM) should be established to raise the standard of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and the trade order.

**Key words:** commercial arbitration, commercial dispute management, trade dispute



##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5.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 30년사, 1996  
대한상사중재협회, 사업보고서, 1975  
상공부, 통상년보, 1973.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절차해설 제10개정판, 1985.  
\_\_\_\_\_, 무역통계,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1986.9.  
김원배·김경배, “대중국의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3.  
장대영, 국제거래의 상사중재와 협상, 전경련 국제경영원, 1983.  
商事法務研究會, 會社法務部, 1982,  
喜多川篤典, 國際商事仲裁の 研究, 1978  
Alan I. Widiss, 「Arbitration」, Practicing Law Institute, 1979,  
Beresford Hartwell Geoffrey M. , The Commercial Way to Jus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Rule Colin,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Business, Jossey-Bass, 2002,  
Wilkinson John H., DONOVAN LEISURE NEWTON & IRVINE ADR PRACTICE BOOK, Wiley Law Publications, 1990.

인터넷 사이트

<http://www.kcab.or.kr/etc>

<http://www.kita.net>